탄 원 서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귀중
사 건 2026고합56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최주원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
탄원 취지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무죄 선고 요청

---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경위와 그 이후 수사기록 처리 과정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법과 증거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건에 관여한 사람마다 무엇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그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 최주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탄원은 기록 반환 과정의 문제를 덮자는 뜻이 아니라, 의혹의 중대성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별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입니다.

2. 기록 반환의 승인과 승인한 내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기소 및 공소사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되돌려주는 데 최주원 전 청장의 최종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승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기록 반환의 법률상 문제와 수사관의 구체적 권리침해를 인식한 채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 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주원에게 최초 보고된 요청의 내용, 국수본 및 국방부와의 협의 경위, 실무진이 제시한 반대 의견이 상부 보고에 포함되었는지, 최종 승인 당시 반환 방법과 범위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주원 측은 본청과 실무진의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해명 또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보고서, 결재 문구, 연락 기록, 당시 담당자의 진술과 대조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외부 연락의 존재와 피고인의 인식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측 설명에는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연락이 국수본과 경북경찰청 간부들을 거쳐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최주원 측은 대통령실의 지시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투어지는 부분에서는 최초 연락의 출처뿐 아니라 최주원에게 실제 전달된 표현과 그가 당시에 파악한 사정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에 관하여도 통화 사실 자체, 통화의 구체적 주제, 이후의 업무 지시가 서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 측의 인사 관련 통화였다는 설명과 이에 반하는 특검 측 자료가 있다면 어느 쪽이든 법정에서 같은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외부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피고인 사이의 공동 고의나 위법한 지시 내용까지 추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2023년 당시 이첩 법령과 전산 처리의 의미를 살펴 주십시오

2023년 당시 시행되던 군사법원법은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중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민간 수사·재판기관의 권한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당시 제228조 제3항과 관련 대통령령은 관할 범죄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 및 군경 협력을 규율했습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경찰 측 기록 인계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국방부에 당연한 회수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첩 공문이 온-나라 시스템에 도달한 상태, KICS 사건 등록 여부, 기록의 실제 인수와 정식 수리·접수의 법적 효과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전산상 미등록을 근거로 반환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엄격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반대로 전산 처리 상황만으로 승인자의 범죄 고의를 단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적용은 이후 개정된 2026년 조문이 아니라 2023년 행위 당시의 규정과 경과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5. 미접수·공문 반송·사본 파기의 개별 책임을 가려 주십시오

공개된 특검 조사자료 관련 보도에는 이첩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경위, 공문 반송, 기록 사본 파기 문제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 업무를 제안하거나 실행했는지, 어떤 보존 의무가 있었는지, 최주원이 각각의 행위를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시·승인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기록 반환을 승인했다는 사정이 공문 미접수, 사본 파기 등 선행·부수 행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모든 경위를 보고받고도 반환을 관철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결재·업무일지·전자문서·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직권남용과 수사권 행사 방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직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남용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및 그 인과관계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기소 보도에서는 특히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의 **수사 개시와 수행에 관한 권리행사 방해**가 중심 혐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어느 지시 또는 승인이 특정 수사관의 어떤 수사행위를 실제로 제한했는지, 기록의 물리적 부재와 수사 중단·지연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이 있었는지가 심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이 반환되었더라도 별도 자료 확보가 가능했는지, 실제 예정된 수사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지연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을 반환받은 뒤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방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수사 차질이 있었다는 인식만으로 피고인 개인의 특정 지시로 인한 법정 결과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유형은 실제 공소장에 기재된 범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 행위와 법적 의무를 별도로 대조해야 하며, 기소되지 않은 내용을 독립된 유죄 사유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7. 고의와 공모는 직책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최주원이 2023년 당시 어떤 법률 검토 결과를 전달받았고, 그와 충돌하는 의견을 알고 있었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는 형식만으로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범죄 고의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는 목적을 알고 그 결과를 의욕하거나 용인했는지까지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관계자와의 공모 여부도 상급기관의 연락, 내부 협의, 최종 승인의 순서만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공동의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 및 각자의 역할은 각각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후행 승인과 선행 실무지시를 구별하여 피고인에게 실제 증명된 범위 이상의 책임을 귀속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8. 무죄를 요청드리며, 예비적으로 개별 사정의 참작을 구합니다

재판부께서 불리한 증거까지 충분히 검토하신 뒤에도 최주원의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 수사관의 권리행사방해 결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인의 죽음과 수사 과정의 중대성을 엄정하게 바라보는 것과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엄격히 증명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혹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일부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실제 보고받은 정보, 직접 관여한 업무, 승인 범위와 결과 발생의 정도 등 증명된 개별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예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죄 요청과 별개로 개별 책임의 원칙을 지켜 달라는 취지입니다.

맺음말

저는 재판부가 외부의 평가나 예단보다 법정에서 검증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공익이 크기에 더욱, 각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책임의 기준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최주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법률·판례: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2023년 당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및 제228조 제3항;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자료 참고: 연합뉴스(2026. 8. 13. 기소 보도), 뉴스1(2026. 8. 26. 공소장 보도), 뉴스핌(2026. 10. 15. 첫 공판 보도). 이 보도에 소개된 수사기관의 주장은 법원이 확정한 사실과 구별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